

오늘은 유학생 신분에서 경영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 갑자기 세무조사의 연락이 온 케이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학생 비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의 문제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셔도 사업은 안된답니다.

(1) 유학생 시절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의 문제점

(1) 留學生時代から自営業を営んでいたことの問題点

유학 비자로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도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 시간 이내 (여름철 등 장기 휴가 중에는 1 일 8 시간까지)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의 경우도 주 28 시간 이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 외 활동 허가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교 이외의 시간에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에 EMS 로
보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유학 비자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인데요

이미 유학 비자로 사업을 시작해버렸다.

유학 비자 만료 후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을 하였다.

그 후 세무조사의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 현실적인 대응법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학생 시절에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취업이라는 선택지보다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법인화하여 (회사를 설립) 경영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조사와 입국관리국의 연계관계

(2) 税務調査の結果は入管に連携するのか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연락이 있을
경우, 사실 유학 비자로 있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세무조사의 문제를 걱정하시기보다 유학시절의 재류 자격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현재의 경영관리 비자의 재류 자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 세무사 법인에서 실제로 담당한 몇 건의 경우에는

재류 자격의 문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세무서 법인 부문과 개인 부문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음
법인의 세무조사에 오는 담당관은 세무서의 법인 부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 소득세를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후 경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매출 계상 누락으로 수정신고를 권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이전 개인 계좌에 입금 부분에 관하여 개인으로서 확정
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인 세무조사 담당자가 개인과 세 부서에 의뢰하여 개인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만하게 끝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 조사는 3 년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수출 무역 등 소비세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조사는 4 기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 이전 기간의 개인 계좌에
주목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설립 후도 경영 비자 변경 허가 전이라면 입관 범상 문제인데,
세무서 직원은 재류 자격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으므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는 정보의 연계관계는 기본적으로 없음
결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청 연계는 기본적으로 없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정보를 다른 관공서 등에 연계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시다만
현재 2019년 시점에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 비자 갱신 시 입국관리국의 체크 포인트
経営管理ビザの更新で、入管は何をチェックするのか
경영 비자 갱신에 입국관리국은 무엇을 체크하는 걸까요 ??

경영 비자 갱신 시 입국관리국이 체크하는 것은
원천징수 표, 법정 조서, 납세증명서입니다!
(1) 入国管理局が審査するのは源泉徴収票・決算書・法定調書・納税証明だけ
(1) 입국 관리국이 심사하는 것은 원천 징수 표 · 결산서 · 법정 조서 · 납세
증명서입니다.
입국 관리국 체크하는 것은 비자 갱신 직전연도의,
원천 징수 표 결산서 법정 조서입니다.

즉, 일단 경영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설립 이 전 시기에 개인적으로 탈세(유학생 비자 시대의 자영업 소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납세 증명서를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있어도 개인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2) もし税務調査があっても個人所得に影響させない結論を見つけること

(2) 만약 세무 조사가 있어도 개인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법인의 세무 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소득 신고
방법은 임원상여 및 임원 대출금 등의 2 가지가 있습니다.

즉, 숨기고 있던 자금을 임원들이 받은 금액(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회사가 빌려준 금액으로 후일 임원이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의 납세 증명서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고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税務調査での指摘を未然に防ぐ方法

(3) 세무 조사의 지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을 경우는

먼저 고문 세무사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까지의 기간에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있던 입출금 내용을 세무사가 파악하고 있으면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결산 서류에 사무소 측에서 알기 쉽게 "00 은행 00 지점의 개인통장의
내역은 장부에 반영 "등과 같이 메모를 기입해두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테크닉도 있습니다.